

동작구의회공고 제2021-23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5월 14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주민자치회는 지역주민이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선택, 결정, 집행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제도로써 지방자치와 그 흐름을 같이 함. 따라서 관내 주민자치회가 실질적·자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각 호에 명시된 위원의 자격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며, 위원이 중립적이고 성실하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례에 명시된 주민자치회 참석 및 사익추구 금지의무 위반을 해촉 사유에 추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위원의 자격 요건을 명확히 함(안 제7조)
- 나. 위원의 의무위반(제11조)에 대하여 해촉 사유를 추가함(안 제12조)
- 다. 그 밖에 조례의 체계·자구 정비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 [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노량진동47-2)]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전화 : 820-1323, FAX : 820-1474, E-mail : jurakim@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에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구청장의 책무 등) ① 구청장은 주민자치회 구성원의 의욕 고취, 역량 강화 등을 위하여 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해당 동 주민자치회는 구청장에게 제1항에 따른 시책 수립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4조제5호 중 “교육”을 “교육프로그램”으로 한다.

제6조의 제목“(위원선정관리위원회)”를“(선정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위원선정관리위원회(이하 “선정관리위원회”)”를 “서울특별시 동작구 OO동 위원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선정관리위원회”를 “선정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기관·단체”를 “기관, 단체”로 하며,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중 “선정관리위원회”를 각각 “선정위원회”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위원은”을 “위원은 제8조제1항에 따라 공개 모집 공고일 기준 18세 이상의 사람으로서”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주민등록이 되어 있”을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을 “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종사자(사업자등록증 및 건강보험자격득

실확인서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 제출이 가능한 사람)”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학교, 기관, 단체”를 “학교와 기관”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선정관리위원회”를 “선정위원회”로 한다.

5. 해당 동에 소재하고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단체에 속하는 사람

가. 직능단체: 각 동 지역의 공익을 위해 조직한 단체로 동 주민센터와 협력 관계를 유지하면서 최근 6개월 이상 활동 내역이 있는 단체

나. 공공단체: 공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률 또는 조례에 따라 설치한 법인 또는 단체

다. 법정단체: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되고 보조금 등을 지원받는 단체

제8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선정관리위원회”를 각각 “선정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주요기관 및 단체, 주민조직”을 “주요 기관 및 단체”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선정관리위원회”를 “선정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단서의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⑩ 그 밖에 위원 위촉 및 주민자치회 구성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1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가진다.

1. 주민자치회 회의 및 활동에 월 1회 이상 참석
2. 제17조에 따른 분과위원회 1곳 이상 참여 및 활동. 다만, 자치회장, 자치부회장 및 간사는 예외로 할 수 있다.
3.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된 각종 교육, 연수 등에 적극 참여

제12조제2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위원이 주민자치회 활동을 통해 사익을 추구하여 제11조제4항을 위반한 경우

4. 위원이 주민자치회 회의 등에 참여·참석을 소홀히 하여 제11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제14조제4항 중 “남은 임기 동안”을 “신임 자치회장 선출 전까지”로 한다.

제17조제2항 중 “분과위원회는 주민자치회”를 “분과위원회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분과위원장은 제7조의 자격을 갖춘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2명 이상 경쟁 시 무기명투표에 따라 재적분과위원 과반수 출석에 다수득표자를 선출한다.

제19조제1항제2호 중 “결정”을 “수립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20조제3항 중 “입안되며,”를 “상정되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자치계획을 구청장”을 “구청장”으로 한다.

제6장의 제목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를 “주민자치회에 대한 지원 및 협조”로 한다.

제22조의 제목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23조제2항 중 “이와 달리 하는”을 “필요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6장에 제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지원조직의 운영) ① 구청장은 교육, 자치계획 수립 등 주민자치회의

운영을 위한 지원조직을 둘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조직의 운영을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조직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28조제목 외의 부분 중 “규칙”을 “규칙으로 정하되, 그 외에 필요한 사항은 각 동별 운영세칙”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1항 및 제1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새로 위촉되는 위원 또는 선출되는 분과위원장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신 설></p> <p>제4조(기능)</p> <p>1. ~ 4. (생 략)</p> <p>5. 그 밖에 주민의 자치소양 강화를 위한 <u>교육</u> 운영 등 위 각 호에 준하는 것으로 자치 활성화와 민관협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업무</p> <p>제6조(<u>위원선정관리위원회</u>) ① <u>위원의 선정 절차 수행 및 관리 업무를 위하여 해당 동에 <u>위원선정관리위원회</u> (이하 “<u>선정관리위원회</u>”라 한다)를 둔다.</u></p> <p>② <u>선정관리위원회</u> 위원은 5명 이내로 하며, 다음 각 호에 따라 동장이 위촉한다.</p> <p>1. (생 략)</p> <p>2. 관내 주요 <u>기관·단체</u> 및 주민자치회가 추천하는 민간인 3명 이내</p>	<p>제2조의2(<u>구청장의 책무 등</u>) ① <u>구청장은 주민자치회 구성원의 의욕 고취, 역량 강화 등을 위하여 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u></p> <p>② <u>해당 동 주민자치회는 구청장에게 제1항에 따른 시책 수립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u></p> <p>제4조(기능)</p> <p>1. ~ 4. (현행과 같음)</p> <p>5. ----- <u>교육프로그램</u> ----- ----- -----</p> <p>제6조(<u>선정위원회</u>) ① ----- ----- ----- <u>서울특별시 동작구 OO동 위원선정위원회</u>(이하 “<u>선정위원회</u>”-----.</p> <p>② <u>선정위원회</u> ----- ----- -----.</p> <p>1. (현행과 같음)</p> <p>2. ----- <u>기관, 단체</u> ----- -----</p>

③ 선정관리위원회를 구성할 때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선정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두며,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

⑤ 선정관리위원회는 위원 위촉이 완료될 때까지 존속한다.

제7조(위원의 자격)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가운데 주민의 자치 소양 강화를 위하여 운영하는 교육(이하 “주민자치학교”라 한다)을 위원 선정 전 6시간 이상, 선정 후 2시간을 포함한 총 8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이어야 하며, 이수의 효력은 2년으로 한다. 다만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연임하고자 하는 위원은 주민자치학교 교육과정 또는 사전에 구청장이 인정한 교육 과정을 임기 중에 6시간, 연임 위촉 후 2시간을 포함한 총 8시간을 이수하여야 한다.

1. 해당 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해당 동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

③ 선정위원회-----

④ 선정위원회-----

⑤ 선정위원회-----

제7조(위원의 자격) ① 위원은 제8조 제1항에 따라 공개 모집 공고일 기준 18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

1. -----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한-----
2. ----- 사업

장애 종사하는 사람

3. 해당 동에 소재한 각급 학교, 기관, 단체에 속한 사람

4. (생략)

<신설>

②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

1. 2. (생략)

3. 선정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 중인 사람

4. 5. (생략)

장의 사업주 또는 종사자(사업자등록증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 제출이 가능한 사람)

3. ----- 학교와 기관-----

4. (현행과 같음)

5. 해당 동에 소재하고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단체에 속하는 사람

가. 직능단체: 각 동 지역의 공익을 위해 조직한 단체로 동 주민센터와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최근 6개월 이상 활동 내역이 있는 단체

나. 공공단체: 공익목적 수행하기 위하여 법률 또는 조례에 따라 설치한 법인 또는 단체

다. 법정단체: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되고 보조금 등을 지원받는 단체

② -----
-----.

1. 2. (현행과 같음)

3. 선정위원회 -----

4. 5. (현행과 같음)

제8조(위원의 위촉) ① 구청장은 선정관리위원회가 공개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한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한다.

② 선정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원이 될 사람을 공개추첨하고,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각각 예비자 순위를 정하여 공개추첨한다.

1. (생략)

2. 정원의 100분의 20 이내는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동 소재 주요기관 및 단체, 주민조직 등에서 추천할 수 있다.

3. (생략)

③·④ (생략)

⑤ 선정관리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추첨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추첨된 사람의 명단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 ⑧ (생략)

⑨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은 해당 선거구 내에 있는 동의 당연직 고문이 된다. 다만, 고문은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권은 갖지 않는다. 그 밖에 위원 위촉 및 주민자치회 구성 등에 필요

제8조(위원의 위촉) ① ----- 선정위원회-----

② 선정위원회-----

1. (현행과 같음)

2. ----- 주요

기관 및 단체 -----

3. (현행과 같음)

③·④ (현행과 같음)

⑤ 선정위원회-----

⑥ ~ ⑧ (현행과 같음)

⑨ -----

----- <후단 삭제>

한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결정한다.

<신 설>

제11조(위원의 의무) ① (생략)

② 위원은 주민자치회 회의 및 활동에 월 1회 이상 참석하고, 제17조에 따른 분과위원회에 1곳 이상 참여하며, 그 밖에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된 각종 교육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③·④ (생략)

제12조(위원의 해촉) ① (생략)

② 구청장은 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생긴 경우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2. (생략)

<신 설>

<신 설>

⑩ 그 밖에 위원 위촉 및 주민자치회 구성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11조(위원의 의무)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가진다.

1. 주민자치회 회의 및 활동에 월 1회 이상 참석

2. 제17조에 따른 분과위원회 1곳 이상 참여 및 활동. 다만, 자치회장, 자치부회장 및 간사는 예외로 할 수 있다.

3.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된 각종 교육, 연수 등에 적극 참여

③·④ (현행과 같음)

제12조(위원의 해촉) ① (현행과 같음)

② -----

-----.

1.·2. (현행과 같음)

3. 위원이 주민자치회 활동을 통해 사익을 추구하여 제11조제4항을 위반한 경우

4. 위원이 주민자치회 회의 등에 참여·참석을 소홀히 하여 제11조제

③ (생략)

제14조(주민자치회의장) ① ~ ③ (생략)

④ 자치부회장은 자치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하며 자치회장 궐위 시 남은 임기 동안 자치회장직을 수행한다.

제17조(분과위원회) ① (생략)

② 분과위원회는 주민자치회 위원과 참여를 희망하는 동 주민으로 구성한다.

③ 분과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구성된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2명 이상 경쟁 시 무기명투표에 따라 재적분과위원 과반수 출석에 다수득표자를 선출한다.

④·⑤ (생략)

제19조(주민총회) ① 주민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한다.

1. (생략)
2. 자치계획의 결정
3. (생략)
4. 기타 지역현안, 주민자치, 민관협력 등에 관한 사항의 보고와 결정

2항을 위반한 경우

③ (현행과 같음)

제14조(주민자치회의장)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신임 자치회장 선출 전까지 -----
-----.

제17조(분과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분과위원회는 -----

-----.

③ 분과위원장은 제7조의 자격을 갖춘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2명 이상 경쟁 시 무기명투표에 따라 재적분과위원 과반수 출석에 다수득표자를 선출한다.

④·⑤ (현행과 같음)

제19조(주민총회) ① -----
-----.

1. (현행과 같음)
2. ----- 수립에 관한 사항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

② ~ ⑥ (생략)

제20조(자치계획의 수립 및 결정) ① ·

② (생략)

③ 자치계획은 주민자치회 정기회의의 결의로 입안되며, 주민총회 참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④ 주민자치회는 자치계획을 결정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자치계획을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구청장은 이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검토 및 반영 여부를 주민자치회에 공식문서로 전달하여야 한다.

⑤ (생략)

제6장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

제22조(지방자치단체의 지원) ① 구청

장은 주민자치회 구성원의 의욕 고취, 역량 강화 등을 위하여 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해당 동 주민자치회는 구청장에게 제1항에 따른 시책 수립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생략)

제23조(관계기관 등과의 협조) ① (생략)

②

구청장은 주민자치회의 요청을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20조(자치계획의 수립 및 결정)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상정되며 -----
-----.

④ -----
----- 구청장-----

-----.

⑤ (현행과 같음)

제6장 주민자치회에 대한 지원 및 협조

제22조(지원) <삭 제>

<삭 제>

(현행 제3항과 같음)

제23조(관계기관 등과의 협조) ① (현

행과 같음)

② -----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고, 이와 달리 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주민자치회에 그 사유를 설명하도록 한다.

③ 구청장은 교육, 자치계획 수립 등 주민자치회의 운영을 위한 지원조직을 둘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조직의 운영을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항 신설 2020.12.24.]

④ 제3항에 따라 지원조직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항 신설 2020.12.24.]

<신 설>

----- 필요한 -----

--.

<삭 제>

<삭 제>

제23조의2(지원조직의 운영) ① 구청장은 교육, 자치계획 수립 등 주민자치회의 운영을 위한 지원조직을 둘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조직의 운영을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조직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

제28조(시행규칙 등)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례」를 준용한다.

제28조(시행규칙 등) -----
----- 규칙으로 정하되, 그
외에 필요한 사항은 각 동별 운영세
칙---